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5. 8.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53호
----------	------

제출연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논산시 읍·면·동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의 손으로 해결하여 나도 이웃도 건강한 100세건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100세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1조)

다. 논산시의 100세건강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0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28. ~ 2020. 3. 20.(21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건강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주민”이란 논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100세건강공동체”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6. “마을건강계획”이란 마을의 역사적·자연적·사회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건강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2장 100세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OO읍·면·동 100세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100세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읍·면·동별 100세건강위원회(이하 “건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기타 임원은 읍·면·동별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기타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건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건강위원회별로 정한다.
- ⑥ 건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문제의 발견을 위한 기초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운영과 평가 등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소모임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 활용
 3.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강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강위원은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건강위원의 선출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서 접수에 따라 건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시장은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선출결과에 따라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 건강위원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건강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건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건강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건강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건강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건강위원회의 회의는 읍·면·동별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월례회와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건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건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4.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의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마을건강계획의 구성 등)

- ①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나누어 읍·면·동별 마을건강계획을 수립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건강계획은 월례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건강위원회는 결정된 마을건강계획을 다음 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건강계획에 대한 행정·예산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건강위원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건강계획을 확정·의결하고, 건강계획 이행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 ⑤ 마을건강계획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주민에게 사업내용과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마을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및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건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담당부서 및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사업)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강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포상)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건강위원회 등에 대하여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부정하게 지원 받은 사업비를 환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100세 행복과장	김 진 수
	공동체건강팀장	이 경 희
	담 당 자	이 남 경 (746-5823)

[별지 서식]

논산시 00읍,면 100세건강위원회 참여신청서 (제7조 관련)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직 업	
*주 소 또는 거소	충청남도 논산시		
<p>본인은 논산시 00읍,면 100세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논산시장 귀하</p>			
<p>※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p> <p>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선택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p> <p>- *필수사항 동의 거부시 프로그램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선택사항 동의 거부시에는 신청 가능합니다.</p>			
구 분	수 집 항 목	이 용 목 적	보유기간
필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항목은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건강위원으로 활동을 위함	3년
선택사항	이메일, 직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마을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건강위원회 등에 대하여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따른 마을건강사업 지원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179,300천원

◎ 2020년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사업홍보자료제작	500원×10,000개=5,000,000원	5,000
주민워크숍 행사운영	5,000,000원×2회=10,000,000원	10,000
행사실비지원금	8,000원×500명×2회=8,000,000원	8,000
행사주민상해보험	2,500,000원×2회=5,000,000원	5,000
주민 역량강화 교육	1,200,000원×15개지역×1회=18,000,000원	18,000
우수사업 발표등 단체포상	· (대상) 1개 지역×2회=4,000,000원 · (최우수) 3개 지역×2회=10,800,000원 · (우수) 3개 지역×2회=9,000,000원	23,800
마을건강사업 지원	2,500,000원×15개지역×1회=37,500,000원	37,500

3. 작성자

100세 행복과장 김진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79,300	179,300	179,300	179,300	179,300	896,500
국 비						
기 금						
도 비						
시 비	179,300	179,300	179,300	179,300	179,300	896,500
세 출	179,300	179,300	179,300	179,300	179,300	896,5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01 일반운영비						
01 행사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1 일반보전금						
09 행사실비지원금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46,800	46,800	46,800	46,800	46,800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0
	지방세					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권 등)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